

# 지방법원 2018.8.29. 선고 2018나7435 판결

보험금

사 건

2018나7435 보험금

텍스트 조절 🛈

초기화

원 고 피 항 소 인

 $\forall$ 

피 고 항 소 인

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

제 1 심 판 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17. 선고 2017가소5089513 판결

변 론 종 결

2018. 7. 11.

판 결 선 고

2018. 8. 29.

주 문

- 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 1. 청구취지



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

· 기각한다.

이유

1 기+11시

텍스트 조절 ①

 $\forall$ 

.0.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원터치건강보험계을 체결하였는데,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에 관련

##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

◎ 계약관련자

- 계 약 자 : B - 주피보험자 : 원고

- 수 익 자: 만기시-B, 상해시-원고, 사망시-상속인

◎ 보험가입금액

- 주계약 : 10,000,000원

◎ 보험기간

- 2000. 10. 20. ~ 2041. 10. 20.(41년)

◎ 지급내용

- 진단급여금 :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(각 1회한) - 15,000,000원

##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

#### 제9조("뇌졸중"의 정의 및 진단확정)

- ① 이 계약에 있어서 "뇌졸중"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3(뇌졸중 분류표)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.
-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(치과의사 제외)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, 이 진단은 병력.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(Brain CT scan), 핵자기 공명영상법(MRI), 뇌

혈관조영술, 양전자방출단층술(PET),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(SPECT),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.

## 제18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

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 이 하는 지금 하는 지

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: 진단급여금 경색증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)

서울대출신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.

2호)

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

6(단, 뇌졸중,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)

#### (별표3) 뇌졸중 분류표

박성남

대표변호사

약관에 규정하는 뇌종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 세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.

	ļ	분류번호
텍스트 조절 ①	I60	
₩		I61
		I62
		I63
		I65
. 대뇌경색(증)을 유발하지 않은	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	I66

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.

나. (1) 원고는 2016. 5. 6.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Brain MRI검사를 받았고, 위 검사를 통하여 2016. 5. 7. 위 병원의 의사 E으로부터 "뇌경색증(I63), 뇌혈관질환의 후유증(I69) 등"의 진단을 받았다. E이 발급한 2016. 5. 7.자 진단서에는 "상기환자(원고)는 발생한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인 분으로, 환자의 연령(50대 초반)을 고려할 때 약 10년 이내에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."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.

(2) E은 위 진단서 발행 이후 원고의 상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였다.

# ① 2016. 8. 5.자 진료소견서

원고의 최종적인 진단병명 :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(진구성뇌경색 등) I69, 뇌경색증 I63

② 2016. 8. 27.자 소견서

원고 상태: 상기 환자는 2016. 5. 6. MRI검사상 T2 FLAIR 좌측과 우측의 전두엽에 흰색 반점인 진구성 열공성 LACUNAR INFARCTION 뇌경색이 관측되었습니다. 이 병변은 일반적으로 40대 이후 발병하여 젊은 20~30대에는 발병하지 않으므로, 보험기간 2000-2016년인 38-54세 사이에 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드림.

20~30대 초반에 뇌경색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, 보험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보험기간 내에 급성기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드림.

③ 2016. 10. 1.자 진료소견서

원고의 진단 가능한 병명 : 허혈성 뇌혈관 질환 I64, 급성기 뇌경색 I63.9, 뇌경색의 후유증 I69.3

신경학적 검진상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다면 해당 증상과 뇌혈관 병변(영상소견)과의 일 치 여부 : 두통, 어지럼증, 오심, 구토 등은 뇌경색이나 허혈성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때 동반 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일치하다고 판단됨.

다. 원고는 2016. 9. 8. 피고에게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뇌졸중 진단급여금 15,000,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는 2016. 11.경 "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최종진단명은 '두통(R51),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적 영상 이상소견(R90)'에 해당할 뿐 '뇌경색증(I63)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뇌졸중 진단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."라고 하며 원고의 위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가. 원고

의고는 님 MPI건사를 통해 인금법사 의사자격증을 가진 D병원의 의사 E으로부터 뇌경색증(I63) 진단을 받았다. 현재 원고의 뇌 MRI

! 있는데, 급성 뇌경색뿐만 아니라 원고가 진단받은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도 뇌경색증(163)에 해

계약에 따른 뇌졸중 진단급여금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! 두통(R51),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적 영상 이상소견(R90)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 사건 보험

계약에서 정한 뇌졸중 진단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(2)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

텍스트 조절 ③

기 발병하였다는 것, 즉 이 사건 보험계약상 뇌졸중 진단급여금과 관련한 보험사고는 "뇌졸중의 건 소장에서 본인이 2011년경부터 두 통과 어지럼증의 증상을 느꼈고, 2013년 이후로는 두통,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을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,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 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.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.

#### 3. 판단

#### 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국내의 병원의 의사자격증을 가진 D병원의 의사 E으로부터 뇌MRI검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뇌졸중으로 분류하는 '뇌경색(증)(I63)'의 진단을 받았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, 한편 갑 제7호증(의료자문 회신)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결과에 의하면, 피고에게 의료자문을 한 사람은 원고의 증상이 '두통(R51),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적 영상이상소견(R90.8)'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고,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속 F도 원고의 증상에 대해 '두통(R51),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적 영상이상소견(R90.8)'으로 볼 수 있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런데 위 기초사실,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, 즉 ① 원고는 2016. 5. 6. 두통, 어지럼증, 오심,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D병원을 찾아 위 병원의 의사 E에게 진료를 받았고, E은 2016. 5. 7. 원고에 대 한 뇌 MRI검사 결과 'T2 FLAIR 좌측과 우측의 전두엽에 흰색 반점인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이 관측되는데, 이 병변은 일반적으로 40 대 이후 발병하며 20~30대의 젊은 나이에는 발병하지 아니하므로, 보험기간이 개시된 2000년은 원고가 약 38세에 해당하여 이때부 터 위 MRI검사를 한 2016년 사이에 급성기 뇌경색이 발병하였다.'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증상에 대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, 169에 해당하는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등의 병명으로 최종진단을 한 점, ② 피고의 의료 자문에 대한 회신(갑 제7 호증)에 의하더라도 2016. 5. 6. 촬영한 원고의 뇌 MRI상 좌측 전두엽에 뇌소실 및 연화소견이 관찰되고, 대뇌백질에 다발성 점상의 음영변화가 관찰되는데, 좌측 전두엽의 병변은 MRI 소견상 진구성으로 보인다고 하는바, E은 이러한 전두엽 및 대뇌백질상의 변화가 뇌혈관질환에 의한 후유증으로서 위 MRI검사 시로부터 약 15년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뇌경색(증)의 진단에 반드시 대뇌동맥 및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에 의한 출혈 소견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, ④ 뇌경색의 경우 신체의 마비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증세가 가벼운 뇌경색의 경우 두통 등의 증세만 나타나는 등으로 그 발병 사실을 모르고 지나 가는 경우도 있는 점, ⑤ 피고의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이나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결과만으로 뇌 MRI검사에 기초한 E의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. ⑥ E이 원고의 증상에 대해 뇌경색증(I63)으로 진단한 것은 원고의 나이 및 증상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이후부터 원고에 대한 MRI검사일인 2016. 5. 6.까지 사이에 원고가 뇌경색증(I63)을 앓았음을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는 2016. 5. 6.경 뇌경색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이후에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고, E의 2016. 5. 7.자 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'뇌졸중의 진단확정'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뇌졸중 진단급여금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

 $\forall$ 

!급여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살피건대,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 세서는 '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는바,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의 문언상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진단급여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 배한 뇌졸중의 발병'이 아니라 '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 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'이라고 할 것이

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,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

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때가 2016. 5. 7.임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,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 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나,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는 2017. 1. 17.로써 위 일자는 원고에 대한 터 3년이 경과하기 전임은 역수상 명백하다.

텍스트 조절 ③ 아들이지 아니한다.

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고의 보험금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. 2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

# 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# 판 사

재판장 판사 최석문

판사 이원호

판사 신동호

# 심급 사건

-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.17.선고 2017가소5089513

## ☆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8.29.선고 2018나7435

# 참조조문

- 보험업법
- <u>상법</u>
- 상법 제662조

-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- <u>의료법</u>



유사 판례

- <u>수원고등법원 2019.10.24 2019나11094</u>

텍스트 조절 ①

<u>6</u>

ℽ